

의안번호	제 호	의결사항
의결 연월일	2020. . . (제 회)	

국가재정법시행령일부개정령안

제출자	국무위원 ○○○ (기획재정부장관)
제출연월일	2020. . .

법제처 심사 전

1. 의결주문

국가재정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2. 제안이유

장기재정전망, 통합재정수지, 일반정부 및 공공부문 재정통계, 예비타당성조사, 타당성 재조사 등과 관련하여, 「국가재정법」이 개정됨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3. 주요내용

가. 장기재정전망의 근거조항 삭제 (현행 제2조 제3항 삭제)

국가재정법이 개정됨에 따라, 기존 시행령에 있던 장기재정전망 근거조항이 법률로 이동하면서, 해당 부분을 삭제함

나. 통합재정수지 관련 조항 신설 (현행 제2조 제4항 및 제5항을 각각 제3항 및 제4항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5항을 신설)

국가재정법이 개정됨에 따라, 법률에 통합재정수지에서 제외되는 기금은 국제기구에서 권고하는 기준에 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한다는 조항이 추가되어 이에 대한 사항을 시행령으로 규정함

다. 일반정부 및 공공부문 재정통계 관련 조항 신설 (현행 제5조 제3항 및 제4항을 각각 제4항 및 제5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3항을 신설)

국가재정법이 개정됨에 따라, 법률에 기획재정부장관은 일반정부 및 공공부문 재정통계를 작성하여야 한다는 조항이 추가되어, 이에 대

한 사항을 시행령으로 규정함

라. 예비타당성조사에 관한 지침의 마련 및 통보 조항 개정 (현행 제13조의3 제1항 제8호 개정)

국가재정법 개정에 따라, 시행령의 법률 인용 조항이 바뀐 것을 반영함

마. 타당성 재조사 요건과 면제요건 관련 조항 개정 (현행 제22조 제1항 및 제2항 개정)

1. 국가재정법 개정에 따라, 기존 시행령상 타당성 재조사 요건과 면제요건의 일부가 법률로 이동하면서, 해당 부분을 삭제함
2. 국가재정법 개정에 따라, 법률에 ‘총사업비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 증가한 사업’과 ‘사업여건의 변동 등으로 해당 사업의 수요예측치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 감소한 사업’이라는 조항이 추가되어, 이에 대한 사항을 시행령으로 규정함

4. 주요토의과제

없 음

5.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 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0000부 등과 합의되었음

라. 기 타 : 1) 신·구조문대비표, 별첨

2) 입법예고(9999. 12. 31. ~ 12. 31.) 결과, 특기할 사항 없음

3) 행정규제 : 규제개혁위원회와 협의 결과, 이견 없음
- 규제 신설·폐지 등, 없음

국가재정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국가재정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3항을 삭제하고, 같은 조 제4항 및 제5항을 각각 제3항 및 제4항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5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⑤법 제7조제2항제6호 단서에서 “국제기구에서 권고하는 기준”이란 국제통화기금의 정부재정통계편람(이하 ‘정부재정통계편람’이라 한다)과 경제개발협력기구 등의 공공부문채무통계작성지침(이하 ‘공공부문통계작성지침’이라 한다)을 말하고 “이 기준에 준하여 통합재정수지에 서 제외되는 기금”이란 다음 각 호의 기금을 말한다.

1. 「기술보증기금법」에 따른 기술보증기금
2. 「농림수산업자 신용보증법」에 따른 농림수산업자신용보증기금
3. 「농어가 목돈마련저축에 관한 법률」에 따른 농어가목돈마련저축장려기금
4.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에 따른 산업기반신용보증기금
5. 「무역보험법」에 따른 무역보험기금
6. 「신용보증기금법」에 따른 신용보증기금
7. 「예금자보호법」에 따른 예금보험기금채권상환기금

8. 「한국주택금융공사법」에 따른 주택금융신용보증기금

9. 「외국환거래법」에 따른 외국환평형기금

제5조제3항 및 제4항을 각각 제4항 및 제5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기획재정부장관은 제2조제5항의 정부재정통계편람 및 공공부문통계작성지침에 따라 법 제9조제2항제2호 및 제3호에 해당하는 기관을 정하여 고시한다. 다만, 기획재정부 장관은 행정안전부장관과 교육부장관에게 법 제9조제2항제2호 나목 및 제3호 중 제2호나목에 해당하는 기관을 정하도록 할 수 있다.

제13조의3제1항제8호 중 “법 제38조제5항”을 “법 제38조제6항”으로 한다.

제2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을 다음과 같이 한다.

법 제50조제2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 증가한 사업”이란 물가인상분 및 공익사업의 시행에 필요한 토지 등의 손실보상비 증가분을 제외한 총사업비가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를 거쳐 확정된 총사업비 대비 100분의 10부터 100분의 20까지의 범위에서 기획재정부장관이 대상 사업의 총사업비 규모에 따라 정하는 비율 이상 증가한 사업을 말한다.

제22조제1항제1호부터 제5호까지를 각각 삭제하고, 같은 조 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법 제50조제2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 감소한

사업”이란 해당 사업의 수요예측치가 100분의 30 이상 감소한 사업을 말한다.

부 칙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조(국가재정운용계획의 수립 등) ①·② (생략) ③ 기획재정부장관은 법 제7조 제2항제2호에 따른 장기 재정전망을 할 때에는 40회계연도 이상의 기간을 대상으로 적어도 5년마다 실시하여야 한다. ④·⑤ (생략) <신 설>	제2조(국가재정운용계획의 수립 등) ①·② (현행과 같음) <삭 제> ③·④ (현행 제4항 및 제5항과 같음) ⑤법 제7조제2항제6호 단서에 서 “국제기구에서 권고하는 기준”이란 국제통화기금의 정부재정통계편람(이하 ‘정부재정통계편람’이라 한다)과 경제개발협력기구 등의 공공부문채무통계작성지침(이하 ‘공공부문통계작성지침’이라 한다)을 말하고 “이 기준에 준하여 통합재정수지에서 제외되는 기금”이란 다음 각 호의 기금을 말한다. 1. 「기술보증기금법」에 따른 기술보증기금 2. 「농림수산업자 신용보증법」에 따른 농림수산업자신

⑥ ~ ⑩ (생략) 제5조(재정정보의 공표) ①·② (생략) <u><신설></u>	<u>용보증기금</u> 3. 「<u>농어가 목돈마련저축에 관한 법률</u>」에 따른 <u>농어가목돈마련저축장려기금</u> 4. 「<u>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u>」에 따른 <u>산업기반신용보증기금</u> 5. 「<u>무역보험법</u>」에 따른 <u>무역보험기금</u> 6. 「<u>신용보증기금법</u>」에 따른 <u>신용보증기금</u> 7. 「<u>예금자보호법</u>」에 따른 <u>예금보험기금채권상환기금</u> 8. 「<u>한국주택금융공사법</u>」에 따른 <u>주택금융신용보증기금</u> 9. 「<u>외국환거래법</u>」에 따른 <u>외국환평형기금</u> ⑥ ~ ⑩ (현행과 같음) 제5조(재정정보의 공표) ①·② (현행과 같음) <u>③기획재정부장관은 제2조제5항의 정부재정통계편람 및 공공부문통계작성지침에 따라 법 제9조제2항제2호 및 제3호에 해당하는 기관을 정하여 고시한다. 다만, 기획재정부 장관은 행정</u>
--	--

③·④ (생략)

제13조의3(국가연구개발사업 예비타당성조사에 관한 업무의 위탁) ① 기획재정부장관은 법 제38조의3제1항에 따라 국가연구개발사업에 대한 예비타당성 조사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업무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위탁할 수 있다.

1. ~ 7. (생략)

8. 법 제38조제5항에 따른 예비타당성조사에 관한 지침의 마련 및 통보

9. (생략)

②·③ (생략)

제22조(타당성 재조사) ① 법 제50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사업”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말한다.

안전부장관과 교육부장관에게 법 제9조제2항제2호 나목 및 제3호 중 제2호나목에 해당하는 기관을 정하도록 할 수 있다.

④·⑤ (현행 제3항 및 제4항과 같음)

제13조의3(국가연구개발사업 예비타당성조사에 관한 업무의 위탁) ① -----

-----.

1. ~ 7. (현행과 같음)

8. 법 제38조제6항-----

9. (현행과 같음)

②·③ (현행과 같음)

제22조(타당성 재조사) ① 법 제50조제2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 증가한 사업”이란 물가인상분 및 공익사업의 시행에 필요한 토지 등의 손실보상비 증가분을 제외한 총

1. <u>총사업비 또는 국가의 재정 지원 규모가 예비타당성조사 대상 규모에 미달하여 예비타당성조사를 실시하지 않았으나 사업추진 과정에서 총사업비와 국가의 재정지원 규모가 예비타당성조사 대상 규모로 증가한 사업</u> 2. <u>예비타당성조사 대상사업 중 예비타당성조사를 거치지 않고 예산에 반영되어 추진 중인 사업</u> 3. <u>물가인상분 및 공익사업의 시행에 필요한 토지 등의 손실보상비 증가분을 제외한 총사업비가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를 거쳐 확정된 총사업비 대비 100분의 10부터 100분의 20까지의 범위에서 기획재정</u>	<u>사업비가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를 거쳐 확정된 총사업비 대비 100분의 10부터 100분의 20까지의 범위에서 기획재정부장관이 대상 사업의 총사업비 규모에 따라 정하는 비율 이상 증가한 사업을 말한다.</u> <u><삭 제></u> <u><삭 제></u> <u><삭 제></u>
---	---

부장관이 대상 사업의 총사업비 규모에 따라 정하는 비율 이상 증가한 사업

4. 사업여건의 변동 등으로 당해 사업의 수요예측치가 100분의 30 이상 감소한 사업

5. 그 밖에 중복투자 등으로 예산낭비 소지가 있는 등 타당성을 재조사할 필요가 있는 사업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업의 상당부분이 이미 시공되어 매몰비용이 차지하는 비중이 큰 경우, 총사업비 증가의 주요 원인이 법정경비 반영 및 상위계획의 변경 등에 해당되는 경우 등과 같이 타당성 재조사의 실익이 없는 때와 지역균형발전, 긴급한 경제·사회적 상황 대응 목적으로 추진되는 사업, 재해 예방·복구 지원 또는 안전 문제 등으로 시급한 추진이 필요한 사업의 경우에는 타당성 재조사를 실시하지 않을 수 있다.

<삭 제>

<삭 제>

②법 제50조제2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 감소한 사업”이란 해당 사업의 수요예측치가 100분의 30 이상 감소한 사업을 말한다.

< 의안 소관 부서명 >

재정전략과	
연 락 처	(044) 215 - 5727